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2023. 4.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45
----------	-------

2023. 4. 4.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위생과)
- 나. 제 출 일 : 2023. 3. 17.
- 다. 회 부 일 : 2023. 3. 22.

2. 제출이유

춤 허용업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춤 허용업소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비(안 제5조제1항)
- 나.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에 관한을 신설(안 제6조)
 - 2년 마다 재지정
- 다. 춤 허용업소 지정 관련 제한규정을 신설(안 제7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춤 허용업소 지정과 관련한 변경사항 신청 대상 추가 신설(안 제8조제1항)
- 마.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CCTV 설치를 권고

(안 제9조제1항)

- 100m2당 1명 → 지하층: 66m2당 1명, 지상층: 100m2당 1명
- 매월 자체 안전점검의 날 운영(공개된 장소에 점검표 비치)
- 안전요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마련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권장

바. 춤 허용업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규정 명문화(안 제10조)

사. 시행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규정(안 부칙 제1조 및 안 제2조)

아.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제2호, 제4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전기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3. 2. 2.~ 2023. 2. 22. (의견 있음)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홍대문화거리협동조합, 홍대클럽상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지정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규정을 반대함. -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이 2년 단위로 지정되면 춤허용업소의 규모나 숫자가 현저하게 줄게 될 것이며, - 투자대비 유효연수를 계상시 매장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투자를 꺼리게 되어 안전관리 강화의 공감대를 깨트릴 수 있음. 	미반영
홍대문화거리협동조합, 홍대클럽상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지정 등 제한) 및 제10조(영업제한 등) 단서 규정을 반대함. - 구청 담당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 판단을 통한 지정 제한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 어떠한 사유로 인해 지정 제한사유가 발생한다는 명확한 상위법령의 조문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고, 조례개정을 통한 지정제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상행위 전체를 위축시키게 되어, 홍대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위배됨. 	미반영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견

검토 원안	수정 의견
<p>제9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p> <p>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6.(생략)</p> <p>7.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66㎡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66㎡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p>	<p>일괄적으로 66㎡ 면적을 건물 전체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 다른 법령의 적용기준을 비교해 보아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은 지상은 영업장면적 100㎡이하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가 필요한 지하는 영업장면적 66㎡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도록 하는 것으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수정하여 명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p>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조례 개정은 2019년 7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한 붕괴사고¹⁾를 계기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사항이 문제로 대두되어 안전기준 강화 차원의 조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포구만의 춤 허용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안전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구축하고자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6조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규정은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최초 지정 시 제출했던 안전관련 구비서류를 재지정 신청시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 춤 허용업소 지정 제한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내,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 후 같은 장소에 6개월 전, 같은 신청자가 2년 전 신청할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1) 광주 치평동 클럽 '붕괴' 사망자2명 “ 사고원인, 복층 구조물 못건더”(2019.7.27. 아주경제)

- 공익을 위해 필요시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검표를 사용하여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하도록 한 사항과,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하와 지상층을 구분하여 안전요원의 복장 등을 착용하여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위험 발생시 영상 음향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기타 안전을 위한 CCTV설치를 권고함.
 - 안 제10조 영업시간 및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 필요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클럽 내 붕괴 사고와 이태원 참사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마포구는 안전하게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완비를 2015년 12월 31일 제정하고 2016년 2월 19일 시행 하였으나, 잇따른 안전 사고 발생으로 드러난 미비한 안전기준을 보완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이 2020년 2월26일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 우리구 춤 허용업소의 특징을 감안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 조문 중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 신설 규정은 기존에 최초 춤 허용업소 지정 시에만 확인할 수 있었던 유흥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완비 여부 등을 2년 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업소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동안 춤 허용업소 지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안전사고 발생과 감염병 확산 등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표 1. 연도별 춤 허용업소 지정 현황(2023.3.16.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0	44	25	21	61	64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21개소로 감소,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

구분	지정업소	영업장면적				안전요원			
		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이상	개정전	개정후	증감	
전체	합계	64	6	25	14	19	202	277	75
	지하층	49	5	18	9	18	167	242	75
	지상층	15	1	7	5	1	35	35	0
서교동	계	62	6	23	14	19	198	273	75
	지하층	47	5	16	9	18	163	238	75
	지상층	15	1	7	5	1	35	35	0
동교동	계	1	0	1	0	0	2	2	0
	지하층	1	0	1	0	0	2	2	0
	지상층	0	0	0	0	0	0	0	0
합정동	계	1	0	1	0	0	2	2	0
	지하층	1	0	1	0	0	2	2	0
	지상층	0	0	0	0	0	0	0	0

-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 마련으로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초 및 재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유흥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제출과 ‘일정규모 이상시 안전요원 배치’, ‘구청장의

영업제한'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
로 보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 차원의 행정
조치임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 안전을 위한 공익과 개인의 권리인 사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그 균형을 맞춰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판단됨으로 관치행정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춤 허용업소 신청 지정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일부 시설에는
허가가 되고 다른 시설은 동일한 안전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거부되지 않
도록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는 등의 시스템이 정비되어 지정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겠음.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